

#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2. 12. 1.)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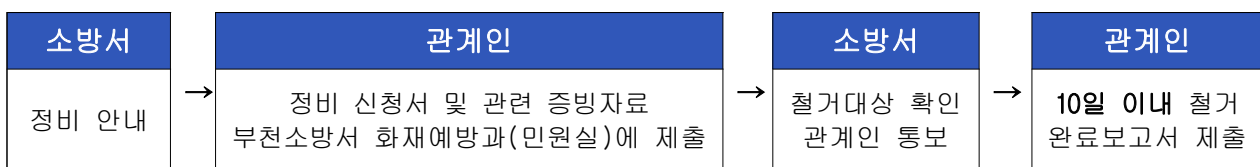
##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

- ~~업무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국방·군사시설,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,500m<sup>2</sup>이상인 층이 있는 것 (삭제)~~
- 노유자생활시설
- 노유자·수련시설,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<sup>2</sup> 이상인 층이 있는 것
- 의원·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,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
- 보물(국보)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- 종합병원, 병원, 치과·한방·요양병원
- 전통시장
- ~~전기저장시설 (삭제)~~
- ~~고층건축물(30층이상) (삭제)~~

'2022년 「소방시설법」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,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·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. 이를 방지하고자,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(의무사항 아님)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[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절차]



※ 속보기 철거 시 수신기와의 결선만 분리하는 것이 아닌, 향후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**설비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여야 함**

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 본 업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 민원실(☎032-650-4321)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2024년 5월

**부천소방서장**